

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→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4.
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조정하는 등 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편(안 제9조와 제10조)

◦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⇌ 주민세 종업원분

나.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(안 제11조)

◦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14. 2. 27~3. 19) 결과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앞에 “제3절 종업원분”을 삽입한다.

제9조 앞의 “제4장 지방소득세”를 삭제한다.

제9조 앞의 “제1절 소득분”을 삭제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세율)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하고,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, 제4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.

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.

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.

제10조 다음에 “제4장 지방소득세”를 삽입한다.

제10조 앞의 “제2절 종업원분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
<u><신 설></u>	<u>제3절 종업원분</u>						
<u>제4장 지방소득세</u>	<u><삭 제></u>						
<u>제1절 소득분</u>	<u><삭 제></u>						
<u>제9조(세율)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.</u>	<u>제9조(세율)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</u>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득세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득세액의 100분의 1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인세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인세액의 100분의 1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세율	소득세분	소득세액의 100분의 10	법인세분	법인세액의 100분의 10	
구분	세율						
소득세분	소득세액의 100분의 10						
법인세분	법인세액의 100분의 10						
<u>제2절 종업원분</u>	<u><삭 제></u>						
<u>제10조(세율)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</u>	<u><삭 제></u>						
<u>제11조 (생 략)</u>	<u>제10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u>						
<u><신 설></u>	<u>제4장 지방소득세</u>						
<u><신 설></u>	<u>제11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.</u>						

현 행	개 정 안
	<p>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<u>양도소득</u>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 항의 세율로 한다.</p>
	<p>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.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세법

제84조의3(세율)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84조의7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.

제92조(세율)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.

과세표준	세율
1천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6
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	7만2천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)
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	58만2천원 + (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)
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59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)
3억원 초과	901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103조의3(세율)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 ·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: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
2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3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(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
8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

9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
10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
11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
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절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
- 나. 중소기업의 주식 등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
-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: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
- ② 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거주자의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(이하 "국외자산"이라 한다)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.
1.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2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
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
 2.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
 - 가. 중소기업의 주식등
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
 - 나. 그 밖의 주식등
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103조의20(세율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.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0분의 10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백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)
200억원 초과	3억9천8백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2조제2항,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(제3조 관련)

1. 비용수반 요인

- 비용수반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(제3조제1항제5호)

3. 미첨부 사유

- 단순한 세목 변경과 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을 정하는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-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

4. 작성자

- 안정행정국 세정과장 김현우